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83
----------	-----

2024. 6. 11.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5. 30. 강남구청장(장애인복지과)

나. 상정의결

- 제319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4. 6. 11.)
“ 원안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상위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연령 상한 기준을 폐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센터 강좌수강 대상의 연령 상한 기준(35세 이하)을 폐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함. (안 제7조)
- 나. 상위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안 제8조)
- 다. 관련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안 제12조)
- 라. 순화된 표현과 용어로 조문을 정비함.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가족정책과, 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4. 4. 19. ~ 2024. 5. 9.) (20일간)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이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되어 공포(2024. 5. 17.字) 됨에 따라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내용 개정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견 없음.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문성)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연령 상한 기준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강좌 수강 등) ① 센터의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자격은 발달장애인으로 서 18세부터 35세로 하고 수강료는 필 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 게 할 수 있다.	제7조(강좌 수강 등) ① ---- 강좌 수 강 대상은 18세 이상인 발달장애인으로 ----- -----.

-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등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관 내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로 (구립)강남세움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 (구립)강남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표> 관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현황

구분	강남세움(구립) 서울시 공모 선정	강남(구립)	서울시 기준
주소	광평로60길 22, 5층	논현로86길 21, 2층	
시설면적	858.44㎡ (260평)	392.69㎡ (119평)	500㎡ (151평)
위탁기간	2019.10.1.~ 2024.9.30.	2020.10.1.~ 2025.9.30.	
이용대상	성인 발달장애인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18세~35세)	성인 발달장애인 (18세 이상)
정원/현원	36명/34명	24명/21명	30명
교육과정	5년제	5년제	5년제
종사자	14명/14명	10명/10명	12명
예산	787,590천원 (사비 500,000 / 구비 287,590)	749,847천원(구비)	
설치일	2019. 11. 1.	최초 : 2014. 6. 25. 이전 : 2020. 9. 23.	

- 집행부의 설명에 따르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강좌 수강 대상인 발달장애인 간의 연령에 따른 편차가 너무 클 경우 교육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현행과 같이 18세부터 35세 이하로 수강대상을 정했다고 함.
- 그러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한 바, 연령대 기준에 따른 차이를 들 정도로 교육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서울시 소속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운영대상에서 연령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무엇보다 연령기준은 차별적 요소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관계로 금번 개정안과 같이 연령 상한 기준 (35세 이하)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제출하였음.

<표> 이용인 현황 (성별, 연령별)

구분	성별		계	연령별				
	남	여		18~30	31~35	36~40	41~45	46~
	38	17		55	45	6	1	1
강남세움	24	10	34	25	5	1	1	2
강남	14	7	21	20	1	0	0	0

- 검토하건데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강남세움평생교육센터는 이용 대상인 발달장애인의 연령 제한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강남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운영을 형평성 있게 개선할 필요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집행부가 설명한 바와 같이 발달장애인의 인지적 특성을 고려할 때 연령 제한이 교육방식이나 효과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보임.

2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 등(안 제8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p>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5.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8조(지원사업) ①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법 제29조----- --- 거주시설·돌봄 지원</p> <p><u>5의2.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u></p>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지난 2021년 6월 8일자로 ‘장애인의 낮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주간활동서비스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정되어 시행된 바, 우리 조례상에도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였음.
- 중앙정부의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2018.9.)에 있어서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확대 추진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에 따라 상위법이 개정된 바¹⁾, 상위법의 하위규범인 조례상에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보임.

3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지원 근거 마련 등(안 제29조의3)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5.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8조(지원사업) ①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법 제29조----- ---- 거주시설·돌봄 지원</p> <p>5의2.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p> <p>5의3. 법 제29조의3에 따른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p>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지난 2021년 6월 8일자로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정되어 시행된 바, 우리 조례상에도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였음.
- 최종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확립되지 않았으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안내에 ‘최종증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 중 도전적 행동이 심하거나 중복장애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로 정의하고 있음.

1) 법 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 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간활동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의 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관내에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가 존재하지만, 최종증발달장애인은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지역사회 생활 및 복지서비스시설에서 거부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현행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 상위법은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종증 발달장애인이 현실적으로 시설 이용 등에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여 최종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통합돌봄센터 설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음.
- 구청장이 제출한 금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확대하고 그 지원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정책적 판단과 결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바,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보임.
- ※ 도전적 행동으로 인하여 장애인복지관 등 시설에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최종증발달장애인을 전담하여 돌봄을 제공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유사하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종증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을 수행 중임.
- ※ 관내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별 최종증발달장애인 지원사업으로는 서울시 성인 최종증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챌린지2), 광주광역시융합돌봄지원센터, 대구 청암낮생활지원센터 등이 있음.

< 지자체별 최종증발달장애인 지원사업 >

사업명	대상	내용	비고
서울시 성인 최종증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 (챌린지2)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타 기관 또는 시설 이용을 거부하거나 이용경험이 없는 서울시 거주 만19세 이상 최종증발달장애인	자기주도적 선택활동 실내 및 외부활동을 포함한 문화여가활동	평일 주 4일 이용 2년간 이용 가능 - 평가를 통해 1년 연장 가능
광주광역시 융합돌봄 지원센터	만 18세 이상 다중지원이 필요한 최종증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체계 구축 낮활동 프로그램 지원주택 및 긴급돌봄 프로그램 등 일상생활과 자립생활 지원	2년간 이용 가능 - 평가를 통해 1년 연장 가능 * 지원주택 서비스의 경우 3년간 이용, 필요시 2년 연장 가능
대구 청암낮생활 지원센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유사	주간활동서비스 급여가 아닌 개인 이용료 부담

※ 광주광역시융합돌봄지원센터는 약 32억을 투입하여 최종증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설치한 기관이며, 나머지사업은 기존 센터를 활용하여 최종증발달장애인 지원하고 있음.

4 그 밖의 사항

현행	개정안
<p>제12조(운영의 위탁) ① (생략)</p> <p>② 구청장은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구 전체 위탁시설 중 동일분야 시설 중에서는 3개소 이내, 전체 시설 중에서는 5개소 이내로 한정하여 시설을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설에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과 지역사회복지를 위하여 위탁받은 사업이 병행 운영 될 경우에는 1개소로 볼 수 있다. 구 전체 위탁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관련시설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련시설 4.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푸드뱅크·마켓 5.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p>제12조(운영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삭제></p>

현행	개정안
<p>년활동시설</p> <p>6.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쉼터</p> <p>7.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여성관련시설</p> <p>8.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p> <p>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육아지원센터</p> <p>10.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p> <p>11.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지원센터</p> <p>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p> <p>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p> <p>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p>

- 그 밖의 개정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의 체계적합성을 고려한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 최종중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1:1 지원

- 추진기관 : 강남구 지정 기관 無(재공고 예정)
- 예산금액 : 775,768천원 (국비50%, 시비50%)
 - 확정내시 : 2024년 최종중발달장애인 통합돌봄(주간 그룹형 1대1) 지원사업 변경내시 통보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7911(2024.4.3.)호
- 추진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3(최종중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시행일 2024.6.11.]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극히 심한 발달장애인(이하 “최종중 발달장애인”이라 한다)에게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통합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업내용

- 이용대상 : 만19세 이상 **도전적 행동을 하는** 최종중 발달장애인(재학중인자 제외)
- 세부내용
 - * 1인 3년 단위 서비스(재조사를 통한 자격갱신)
 - * 주5일(주말, 공휴일 휴무) 9시~18시까지 운영(월 최대 176시간)
 - * 제공인력 이용자 1:1 매칭
 - * 서비스 이용자 그룹 구성 가능(서비스 대상자 2~3인 + 제공인력 2~3인)
 - * 바우처시스템을 통한 결제(시간당 24,220원 30분단위 12,110원)
 - ※ 본인부담금 없음

- 제공 프로그램 예시

- 일상생활 훈련(신체활동, 가사활동, 금전관리 등)
- 취미활동(통합활동, 요리활동, 생태활동, 예술활동 등)
- 자립생활(낮활동지원, 지역사회활동, 관계지원, 권익옹호활동 등)

- 행동지원(도전 행동지원)
- 가족지원(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자조모임, 휴식지원)

□ 최종중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

- 추진기관 : 충현복지관 (2017~2023년 시범사업 추진기관)
 - 시범기관 : 서울시 51개 장애인복지관 中 23개소
 - 시범사업명 : 최종중 장애인 낮활동 사업
- 예산금액 : 233,810천원 (국비40%, 시비36%, 구비24%)

(단위:천원)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매칭비율
계	233,810	93,524	84,171	56,115	
본예산	165,261	66,105	49,578	49,578	국40,시30,구30
추경예산	68,549	27,419	34,593	6,537	국40,시36,구24

- 가 내 시 : 2024년도 발달장애인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사전통보(2023.9.15.)
- 확정내시 : 2024년 최종중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 확정내시 알림(2023.12.29.)
- 추진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3(최종중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시행일 2024.6.11.]**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극히 심한 발달장애인(이하 “최종중 발달장애인”이라 한다)에게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통합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업내용
 - 이용대상 : 만19세 이상 **도전적 행동을 하는** 최종중 발달장애인(재학중인자 제외)
 - 세부내용

- * 1인 3년 단위 서비스
- * 주4일(월,화,목,금) 10시~16시까지 운영
- * 일상생활 훈련, 문화건강 프로그램, 음악·도예·원예·요리 활동 등 실시
- * 사회복지사 1명이 최중증 발달장애인 1명을 케어
- 서비스 제공인력 : 팀장1명, 사회복지사 4명

2023년 사업추진

- 추진기관 : 충현복지관
- 이용인원 : 도전적 행동을 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4명
(사회복지사 2명이 케어)
- * 2017년 시범사업 시작 : 계약직 2명
- * 2022년 정규직으로 전환
- 사업비 총11,400천원 [9,000천원(보조금)+2,400천원(법인자부담)]
(프로그램 운영 관련 강사비로 사용)
- 강사비 1시간 = 5만원 · 강사비 1시간 추가시 4만원

2023년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사업 하반기 활동시간표

요일 시간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10:00 ~10:30	권익옹호 (자치활동)	소그룹 활동 (통합체육)	대그룹 활동 (통합체육)	자립생활 (경제활동)
10:30 ~12:00	권익옹호 (자기 선택활동 /자기표현)			
12:00 ~ 13:30	점심식사 및 개인위생관리			
13:30 ~14:30	소그룹 활동 (통합음악)	사회참여 (지역사회시설이용)	권익옹호 (자기 선택활동 /자기표현)	자립생활 (요리활동)
14:30 ~15:30	정리정돈 및 휴식		소그룹 활동 (공예활동)	
14:30 ~16:00	취미여가 (방송댄스)		자립생활 (생활예절)	
16:00~	정리정돈 및 휴식, 귀가준비 및 귀가			

□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 추진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간활동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의 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업목적

: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있고,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

○ 사업개요

사업명 구분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64명	175명
제공기관 수	4개소	3개소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18세이상 65세 미만 • 주요내용 성인발달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낮활동 지원 바우처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6세이상 18세 미만 • 주요내용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후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여가 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 지원
서비스시간	월 132시간 ~ 월 176시간 시간당 단가: 16,150원~ 24,220원	월 66시간 시간당 단가: 12,920원~ 16,150원
활동 프로그램	자조모임, 건강 증진 활동, 문화관람, 일상생활자립관련 교육, 창의적 활동 등	취미여가활동, 직업탐구활동, 자립준비활동, 관람체험활동 등
기관현황	서울장애인부모연대-활동지원센터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뛰어놀자사회서비스센터 공감방과후센터	뛰어놀자사회서비스센터 공감방과후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오른
예산액	1,545,186천원 (국50 : 시50)	1,418,638천원 (국50 : 시50)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추진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 사업내용

- 대상자 : 18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성인 발달장애인
- 주요내용 : 성인발달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낮활동 지원 바우처 서비스
 - 자조모임, 건강 증진 활동, 문화관람, 일상생활자립관련 교육, 창의적 활동 등

○ 지원내용

구분	기본형	확장형
주간활동 제공시간	132시간	176시간
활동지원 시간감액	-	△22시간
총 급여제공 시간	132시간	154시간

- 서비스단가 : 16,150원 ~ 24,220원(이용자 그룹 규모별 차등단가 지급)

○ 기관현황

사업명	소재지	기관명	지정기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논현2동	서울장애인부모연대-활동지원센터	3년
	수서동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3년
	개포3동	뛰어놀자사회서비스센터	3년
	역삼2동	공감방과후센터	3년

○ 예산액 : 1,545,186천원(국비 50% 시비 50%)

※ 2024년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확정내시 통보[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505(2024.1.8.)호]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추진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 사업내용

- 대상자 : 6세 이상 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청소년 발달장애인
- 주요내용 :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후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 지원
 - 취미여가활동, 직업탐구활동, 자립준비활동, 관람체험활동 등

○ 지원내용

- 서비스단가 : 12,920원 ~ 16,150원(이용자 그룹 규모별 차등단가 지급)
- 서비스시간 : 월 66시간

○ 기관현황

사업명	소재지	기관명	지정기간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일원1동	사회적협동조합 오른	3년
	개포3동	뛰어놀자사회서비스센터	3년
	역삼2동	공감방과후센터	3년

○ 예산액 : 1,418,638천원(국비 50% 시비 50%)

※ 2024년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확정내시 통보[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505(2024.1.8.)호]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83
----------	-----

제출연월일: 2024. 5. 30.
제출자: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장애인복지과

1. 제안이유

상위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연령 상한 기준을 폐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센터 강좌수강 대상의 연령 상한 기준(35세 이하)을 폐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함. (안 제7조)
- 나. 상위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안 제8조)
- 다. 관련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안 제12조)
- 라. 순화된 표현과 용어로 조문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가족정책과, 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4. 4. 19. ~ 2024. 5. 9.) (20일간)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이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되어 공포(2024. 5. 17.字) 됨에 따라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내용 개정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강구하여야”를 “마련하여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자격은 발달장애인으로서 18세부터 35세로”를 “강좌 수강 대상은 18세 이상인 발달장애인으로”로 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를 “법 제29조”로,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을 “거주시설·돌봄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

5의3. 법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제2호 중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타인을 기만하여”를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타인을 속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방해를 초래한”을 “지장을 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검사결과”를 “검사 결과”로 한다.

제16조 중 “아니 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② (생략)</p> <p>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보호자가 사회·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u>강구하여야</u> 한다.</p> <p>제7조(강좌 수강 등) ① 센터의 <u>강좌</u>를 수강할 수 있는 자격은 <u>발달장애</u>인으로서 <u>18세부터 35세로</u> 하고 수강료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5. <u>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u></p> <p><신 설></p> <p><신 설></p>	<p>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마련하여야</u> -----.</p> <p>제7조(강좌 수강 등) ① ----- <u>강좌</u>수강 대상은 <u>18세 이상인 발달장애</u>인으로서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지원사업) ①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법 제29조</u>----- ----- <u>거주시설·돌봄 지원</u></p> <p>5의2. <u>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u></p> <p>5의3. <u>법 제29조의3에 따른 최종증</u></p>

6. ~ 9. (생략)

② (생략)

제12조(운영의 위탁)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구 전체 위탁시설 중 동일분야 시설 중에서는 3개소 이내, 전체 시설 중에서는 5개소 이내로 한정하여 시설을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설에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과 지역사회복지를 위하여 위탁받은 사업이 병행 운영 될 경우에는 1개소로 볼 수 있다. 구 전체 위탁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포함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종합 사회복지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관련시설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 관련시설
4.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푸드뱅크·마켓
5.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6.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운영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

소년쉼터

7.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여성

관련시설

8.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

집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정

보센터·육아지원센터

10.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

강가정지원센터

11.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지원센터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수강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략)
2.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타인을 기만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3. 교육의 원활한 진행에 방해를 초래한 경우
4. ~ 6. (생략)

제15조(지도감독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협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드러난 경우에는 경고, 종사자의 해임 요구 및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이용의 제한) -----

-----.

1. (현행과 같음)
2.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타인을 속여 -----
3. ----- 지장을 준 -----
4. ~ 6. (현행과 같음)

제15조(지도감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검사 결과 -----

-----.

제16조(비밀 준수의 의무) -----

----- 안 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 미발생

4. 작성자

- 장애인복지과 행정8급 현채이(02-3423-5885)